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정배

전화 02-2204-4312

## 보 도 자 료

2025. 5. 1.(목)

### 제 목

#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발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A社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오늘(5. 1.)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 결과, A社는 ① '직매입상품'(A社가 매입 후 직접 판매), ② 'PB상품'(자회사인 B社를 통해 기획·생산 후 직접 판매), ③ '중개상품'(판매자와 소비자 중개 후 수수료 취득)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 소비자들에게는 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검색순위인 'A랭킹'이 기존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고지하였음에도,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 ▲'19. 3.~'24. 11.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51,300개에 대해 16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상위에 고정 배치하고 ▲'20. 12.~'21. 9. 일정 범위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에 대해 검색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소스코드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 같은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의 의도와 배경, 범행 방법 등을 규명함으로써,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인 A社가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침해하고 중개상품 판매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였음
-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정거래저해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① 피고인

- A社 (서울 송파구 소재, '24년 매출액 합계 약 36조 1,200억 원)
- B社 (서울 송파구 소재, '20. 7. 설립된 A社의 자회사, PB상품 기획·생산 등을 전담)

※ PB(Private Brand)상품 :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판매하되 생산만 제조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

## ② 공소사실 요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A社는 ① '직매입상품'(A社가 매입 후 직접 판매), ② 'PB상품'(자회사인 B社를 통해 기획·생산 후 직접 판매), ③ '중개상품'(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 취득)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B社와 공모하여,
- 소비자들에게는 위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검색순위인 'A랭킹'이 기존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고지하였음에도,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 ▲ '19. 3. ~ '24. 11.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51,300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를 무시한 채 16만여 회에 걸쳐 순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A랭킹' 검색결과 상위에 고정 배치하고 ▲ 이와 함께 '20. 12. ~ '21. 9. 'A랭킹' 검색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일정 범위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에 대해 최대 1.5배 가중하는 방법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 자기상품인 '직매입상품' 및 'PB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상품인 '중개상품'보다 우량·유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중개상품 판매업자의 고객을 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II

### 주요 수사 경과

- '24. 6.                    공정위 고발장 접수
- '24. 6.~'25. 4.        공정위 및 A·B社 본사 등 압수수색, A·B社 임직원 등 조사, 'A랭킹' 산정 알고리즘 분석 등
- '25. 5. 1.             A·B社 불구속 기소

## III

### 수사 결과 및 의의

#### ①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의 배경과 의도, 실행방법, 결과 확인

- A社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검색순위인 'A랭킹'이 기존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A社는 '14년경부터 자체 물류·배송시스템 확충 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나, '17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18년경까지 영업 손실이 지속되자, 자기상품인 '직매입상품' 및 'PB상품'의 판매량을 늘려 영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19년 초경부터 'A랭킹'의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하였음

※ A社는 본격적인 검색순위 조정 이전에, 검색순위 3위 이상 상품이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검색순위가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횟수와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내부 분석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음

- 이와 같은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은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구체적으로, A社의 '직매입상품' 및 'PB상품' 담당 부서와 B社는 ▲인지도가 낮은 신상품의 판매 촉진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재고 소진 ▲일부 '직매입상품'의 판매량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 수수 등의 목적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 A社の 'A랭킹' 개발·운영부서는 위와 같이 선정된 상품을 특정 검색순위에 인위적으로 고정 배치하거나, 일정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는 아예 검색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가중하는 방법으로 최종 검색순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기획·생산비용을 직접 부담한 'PB상품'과 짧은 유통기한·유행주기로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재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신선·패션상품'은 약 5년간 12만여 회에 걸쳐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PB상품'의 경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하였음

● 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A랭킹' 상위권에 위치할 수 없고 심지어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다수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이 검색순위 1위에 상당 기간 고정 배치되었고, 이와 함께 일부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은 검색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가 최대 1.5배 가중됨으로써 검색순위가 상승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개상품'은 '직매입상품'이나 'PB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A랭킹' 순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음

※ ▲실제로 A社가 'A랭킹' 최상위에 고정 배치한 일부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상당, 매출액은 76% 상당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社は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하기도 하였음

## ② 철저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사안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

●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A·B社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과 'A랭킹' 산정 소스코드 분석 등 과학수사, 다수의 임직원 조사 등을 통해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의 배경과 의도, 구체적인 실행방법, 결과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였음

※ ▲임직원 80여 명의 PC와 공유 드라이브 등을 포렌식하여 약 30만 개의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였고, 검색순위 조정에 적용된 10만 개 상당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압수하였으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통해 소스코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30여 명의 임직원을 조사하였음

●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A社の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된 내용과 달리 자기상품만의 'A랭킹' 검색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부분은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③ 온라인 쇼핑몰의 공정거래저해범죄에 엄정 대응

-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는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 상품 정보를 다수 보유하며 사업상 이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검색결과와 검색순위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이 같은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자기상품의 검색결과나 검색순위를 조정한다면, 소비자로서는 합리적 상품 선택을 침해받게 되고, 중개상품 판매업자로서는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됨
- 이에, 검찰은 'A랭킹'에 대한 고지 내용과 달리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행위가 온라인 쇼핑몰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A社와 B社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IV 향후 계획

-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